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4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배·서일준

김정재 · 임이자 · 박성훈

정동만 · 김소희 · 박충권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·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·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.

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.

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·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6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4조제4항 본문 중 "3년으로"를 "4년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	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	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	4		
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			
은 날부터 <u>3년으로</u> 한다. 다만,	<u>4년으로</u>		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			
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			
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			
수 있다.		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		